

제55차 부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1. 회 의 일 시 : 2018. 3. 7.(수) 17:00~18:00
 2. 회 의 장 소 : 밀레니엄관 9층 대회의실
 3. 참 석 위 원 : 이종복, 임웅택, 이한석, 김주연, 이재선, 김원선, 박병림,
박재관 의원(8명)
 4. 불 참 위 원 : 나성환, 김세찬, 이정환 의원(3명)
 5. 회 의 안 건 : 대학평의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
 6. 회의 발언록
- < 개 회 >
- [] (간사) : 개의 성원 보고(의원정수 11명 중 8명 참석)
 - [] (의장) : 부천대학교 평의원회(이하 평의원회)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안건 1. 대학평의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

- [] (의장) : 기획조정처에서는 금일 심의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[] (전략기획팀 주무관) : 대학평의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.
 - 개정 배경 설명
 - 부천대학교 규정 제·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개정(안)임을 설명
 - 회의록 공개의 방법과 범위를 명시하는 신설 조항 내용 설명
- [] (의장) :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 바랍니다.
- [] (의원) : 이전 회의 3차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?
- [] (전략기획팀 주무관) : 52차부터 54차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있습니다.

평의원(이재선)	평의원(이한석)	평의원(김주연)
이재선	이한석	김주연

○ [REDACTED] (의장) :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.

○ 참석의원일동 : 의원 전원 동의하에 심의를 마침

7. 폐회

- 오늘 안건에 대해 심의를 마치며, 간서명할 3인(이재선 의원, 이한석 의원, 김주연 의원)을 지정하고 폐회를 선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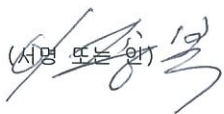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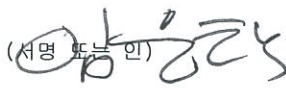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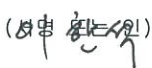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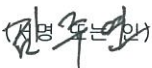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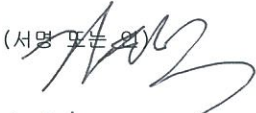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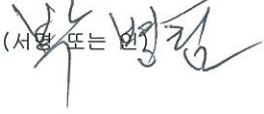
붙임1. 대학평의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

평의원(이재선)	평의원(이한석)	평의원(김주연)
이재선	이한석	김주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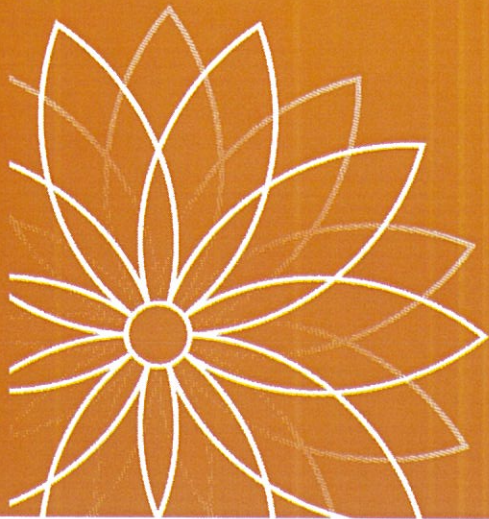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8. 3. 7.

(참석 의원 확인) 의원명은 무순임.

의 장	이 종 복	(서명 또는 인) 
부의장	이 정 환	(서명 또는 인) 불참
평의원	임 웅 택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김 세 찬	(서명 또는 인) 불참
평의원	이 한 석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김 주 연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이 재 선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김 원 선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박 병 림	(서명 또는 인) 
평의원	나 성 환	(서명 또는 인) 불참
평의원	박 재 관	(서명 또는 인) 

대학평의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



2018. 3. 7.
기획조정처



대학평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개정(안)

□ 관련 규정

고등교육법

제19조의2(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등) [신설 2017.11.28.]

⑥ **대학평의위원회**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**기록된 회의록**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**공개하여야 한다**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대학평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

제16조(규정의 개정)

이 세칙의 개정은 평의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개정 이유

○ 개정 고등교육법 준수

-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8.5.29. 시행 예정
- 대학 내 중요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

○ 법령상 위원회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필요

-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방법과 범위 명시

규정 신구대조표

대학평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(9-1-4)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제11조(회의록) ① 평의위원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평의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록이 2매 이상일 때는 1매 이후부터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이 간서명토록 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. <u><신 설></u>	제11조(회의록 등) ① 좌 동 ② 좌 동 ③ 회의록은 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. 평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평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	법정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위함